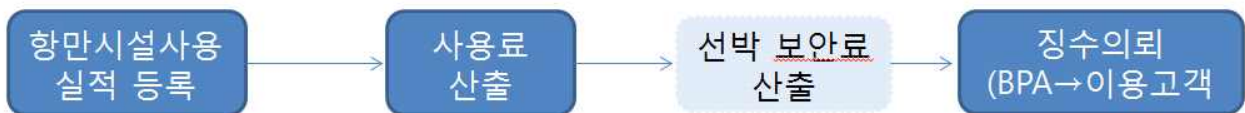


부산항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 관련 Q&A(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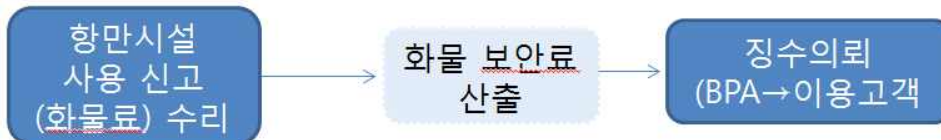
- ◆ 보안료 통합징수를 위한 Port-MIS 사용법관련 지자체, 지방청 및 항만공사 Port-MIS 담당자 대상으로 '17.12.19/세종시 정부청사 4동 중회의실(566호)에서 개최한 교육 결과를 토대로 문의 선사 및 관련업계의 문의사항 중심으로 우리공사에서 재작성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및 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별표 1 (제3조제1항 관련) 참고

부산항 항만시설 보안료 해수부 통합 Port-MIS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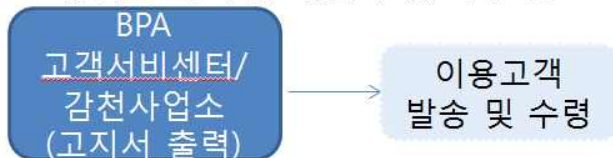
1. 선박 보안료 징수



2. 화물 보안료 징수



3. 통합 고지서 출력(선사 및 화주 신고 대행)



BPA
Your Dream to the World



BPA
Your Dream to the World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부]

1.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의 시행시기는?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2019년 1월 1일 화 00시 이후 입항하는 외항선박과 출항하는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하여 적용함

※ 외항선은 2019년 1월 1일 화 00시 이후 입항 시 화물보안료가 발생하고, 국제여객선은 출항 시 여객보안료 발생함

2. 항만시설보안료 요율은?

답)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은 「항만보안법」 제42조제4항 관련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105-209호, 2015.12.28.)’에서 정함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3. 항만시설보안료 고지·징수 절차는?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기존 항만시설사용료와 같은 절차로 단일고지서에 의해 고지·징수됨

즉,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에 항만시설보안료(선박보안료, 화물보안료, 여객보안료) 항목을 추가하여 통합 고지되며, 납부 및 미수금 관리 등 절차는 항만시설사용료와 동일함

다만,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보안료 항목만 고지됨

4.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 받는 시설의 경우 항만시설보안료도 감면되는지?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시설사용료와 근거 법령 및 목적이 달라 감면되지 않음(원칙적으로 감면 불가함)

5. 항만시설보안료에 적용되는 세율은?

답) 기존 항만시설사용료과 같이 “0”세율 또는 “0”세 신고 면제

6. 항만시설보안료가 소액인 경우 고지금액은?

답) 여객보안료를 제외한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합산 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항만시설사용료의 예에 따라 고지금액은 3,000원으로 함(기준금액)

예시) 항만시설사용료(3,000원) + 항만보안료(300원) 합산기준 3,300원 이상이므로 고지 대상이 됨, 대부분 항만시설사용(화물료)은 3,000원이 초과된다고 가정하면 보안료가 합산되어 고지됨

7. 선박이 1회 입항하여 2개 이상의 시설에서 하역하는 경우 항만시설보안료는?

답) 선박보안료는 1회 입항시 총톤수 기준(3원/톤) 계산되며, 부두별 접안일
할 계산(시간별)하여 부과하며, 화물보안료는 부두별 하역량에 따라
부과되며, 신고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개별 징수됨

예시) 10,000톤 컨테이너선이 북항 △△부두에 12시간 접안 후 컨테
이너 20ft화물 100개를 선적하고 출항함

→ 선박보안료 : $10,000\text{톤} \times 3\text{원} = 30,000\text{원}$

→ 화물보안료 : $100\text{개} \times 86\text{원} = 8,600\text{원}$

8. 항만시설보안료의 원단위 절사?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공과금에 해당되어,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원단위 절사 후 합산금액으로 고지됨

예시) 화물료 8,226원 + 보안료 258원 인 경우, 고지서 발급 총액은
8,470원(각각 절사 후 8,220원+250원)이 통합 부과됨

9. 화물보안료의 대납 대상은?

답) 화물보안료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 고지·징수됨에 따라 「항만
법」 제30조제5항을 준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사 및 해운대
리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함

* 단일화주의 경우 대납경비 적용 제외

10. 화물보안료 대납경비 요율은?

답) 부산항만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대납경비 요율은 선사 대
표를 포함한 관계기관·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납입한 항만시설보
안료의 6.8%로 함

다만, 국가 소유·관리(지방청/지자체)하는 시설의 대납경비는 관계기관 협의 외에 법령의 근거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항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대납경비 요율을 준용하여 납입한 항만시설보안료의 3%로 함

대납경비 3%의 지급방식은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무역항이 현금 입금방식(계좌이체) 또는 투자비 보전 대상 등은 상계정산을 통해 처리 가능함

11. 화물보안료 대납경비 청구 방식은?

답) 원래는 화물보안료의 대납경비가 별도로 청구될 예정이었으나,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합 Port-MIS 시스템에 화물료 대납경비 청구 양식에 화물보안료를 포함시켜달라고 있도록 해수부 항만운영과에 건의를 한 상태임. (1월 1일 시행 이후 확인 건의사항 확인 가능)